- 2021년 7월 중 -

불법어업 지도 · 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추진목표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

1 육 · 해상 지도 · 점검 계획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금지기간 · 체장 조업행위 점검

○ 7월 주요어종의 포획 금지기간·체장(체중) 생산·유통 감시 강화

- (주요어종) 갈치, 말쥐치, 해삼,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등

□ 접경수역에서 우리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 EEZ침범 예방활동

○ 무허가 어업으로 외국EEZ를 침범하여 나포될 경우 어업허가 즉시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21.2.25.)

○ 외국EEZ 경계 조업선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EEZ침범행위 집중 단속

- 위치발신장치 작동여부 확인, 모니터링시스템 활용한 감시강화, 통신지도

□ 하계 "휴가철" 스킨스쿠버장비를 이용한 포획행위 단속

○ 공기통, 작살 등 스킨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불법나잠어업* 및 비어업인 포획·채취행위**에 대해 육·해상 점검강화

* 나잠어업인 「수산업법」제6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어업인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위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업구역 위반 ·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 조업행위 감시

○ 관할해역 근해저인망어선 조업구역 위반행위

* [법령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3]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 대게 · 붉은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따른 불법어업 지도 · 단속 강화

○ 7월부터 대게 및 붉은대게 포획이 금지*됨에 따라 연·근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 강화 및 유통·보관 행위 육상 점검 실시

* 대게 포획 금지기간 6.1~11.30(131°30′E 이동수역은 6.1~10.31.)

** 붉은대게 포획 금지기간 7.10~8.25(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1~7.10)

□ 고래류 자원보존을 위한 고래 불법 포획행위 감시 강화

○ 해경과 협조하여 동해안 고래류 불법 포획행위 감시 강화

- (불법포획)공매금지, (좌초·표류)위판금지*/연구·교육용/폐기, (혼획)위판허용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시행'21.5.10.)

□ 어구사용 관리를 위한 어구실명제 이행여부 점검

○ 자망·통발어구를 사용하는 어업대상으로 어구실명제 준수여부 확인 및 일련번호를 통한 어구사용량 지도·점검

* **(현황)** 어구실명제 부착 이행 준수, 어구 일련번호 표기 未정착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2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 연안통발(그물코 22mm이하 사용금지)의 주 포획 어종인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를 **붕장어, 낙지, 새우류**로 개정(민꽃게류 삭제)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별표3의4]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개정 전			개정·시행(2020.10.15.)		
종류	주포획어종	사용금지 그물코	종류	주포획어종	사용금지 그물코
연안통발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22밀리미터 이하	연안통발	<u>붕장어, 낙지, 새우류</u>	22밀리미터 이하

3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붙임 1참조)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시행(시행 '20.9.25.)

개정 전	개정 후 (시행 2020.9.25)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 제14조(포획·채취)① 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1, 별표2]
제70조(과태료) ②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신설)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시행 '21.1.1.)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별표2], ('20년) 39종 → ('21년) 42종

품 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개서대	26cm	민어	33cm	대게	9cm
문치가자미	개정: 20cm (단, 3년간 17cm)	방어	30cm	털게	7cm(강원)
참가자미	개정: 20cm (단, 3년간 17cm)	볼락	15cm	닭새우	5cm
감성돔	개정: 25cm	붕장어	35cm	펄닭새우	10cm
돌돔	24cm	조피볼락	23cm	백합	5cm
참돔	24cm	쥐노래미	20cm	소라	5cm(제주 7cm)
황돔	15cm	황복	20cm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4cm(제주)
넙치	개정: 35cm	참홍어	42cm	전복류	7cm(제주 10cm)
농어	30cm	꽃게	6.4cm	기수재첩	1.5cm
대구	개정: 35cm	갈치	18cm(항문장)	대문어	개정: 600g(중량)
도루묵	11cm	말쥐치	18cm	고등어	21cm
참조기	15cm	키조개	18cm(부산,울산, 강원, 경북,경남)	갯장어	40cm
살오징어	개정: 15cm (외투장)	미거지	40cm	**기름가자미** (신설)	개정: 20cm 신설 (단, 3년간 17cm)
용가자미 (신설)	개정: 20cm (단, 3년간 17cm)	**청어** (신설)	*개정:20cm 신설	※붉은 글씨 : 개정시행되는 건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시행 ‘21.1.1.)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20년) 42종 → (‘21년) 44종

품 종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개서대	7.1~8.31	새조개	6.16~9.30(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대구	개정: 1.16~2.15로 일원화	소라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문치가자미	12.1~익년 1.31	전복류	9.1~10.31(제주 10.1~12.31)
연어	10.1~11.30	코끼리조개	4.1~7.31(강원, 경북)
전어	5.1~7.15(단, 강원, 경부 제외)	키조개	7.1~8.31
쥐노래미	11.1~12.31	가리비	3.1~6.30
참홍어	6.1~7.15	개다시마	11.1~익년 1.31
참조기	7.1~7.31(단, 유자망 4.22~8.10)	감태	5.1~7.31(제주 연중)
꽃게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곰피	5.1~7.31
대게	6.1~11.30	넓미역	개정: 9.1~11.30(제주) 단, 지자체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붉은대게	7.10~8.25(단, 강원연안자망 6.1~7.10)	대황	5.1~7.31
털게	4.1~5.31(강원)	도박류	10.1~익년 4.30
닭새우	7.1~8.31	뜸부기	8.1~9.30
대하	5.1~6.30	우뭇가사리	11.1~익년 4.30
펄닭새우	6.1~8.31	톳	10.1~익년 1.31
백합	7.1~8.20	해삼	7.1~7.31
갈치	7.1~7.31(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북위 33도 이남 제외)	살오징어	개정: 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고등어	4.1~6.30 중 1개월	말쥐치	5.1~7.31
옥돔	7.21~8.20	낙지	6.1~6.30 (지자체 고시 별도)
오분자기	7.1~8.31	명태	1.1~12.31
주꾸미	5.11~8.31	삼치	개정: 5.1~5.31(신설)
감성돔	개정: 5.1~5.31(신설)	※ 파란색 표시 부분 개정사항	
참문어	개정: 5.16~6.30(신설) 단, 시·도지사가 5.1~9.15기간 중 46일 이상 별도고시 가능		

* 별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경남·전남) 5.24～7.8./(제주도)8.1～9.15.

4 어선안전조업법[`19.8.27.제정, `20.8.28. 시행]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3조 위치통지 미보고 어선의 수색·구조 기관 통보시간 알림(본부 어선안전정책과, '21.1.27.)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은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위치통지 지정시간부터 6시간 경과 후*로 정함

* 위치보고 최소시간(특정해역 6시간), 어업인 조업시간, 위치확인 소요시간 등을 고려

□ 주요 내용

○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

○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톤수 15톤 미만 어선 출항금지. 다만, 태풍 및 겨울철*에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톤수 30톤 미만 어선 출항금지

* 11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 기간 중

○ 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의무 강화*

* (현행) 1일 1~3회 위치보고 → (개선) 1일 1~3회 위치보고 + 풍랑특보(매 12시간 마다), 태풍특보(매 4시간 마다)시 추가 위치 보고

5 면세유

□ 지도점검 계획 : 7월 중

○ 지역/대상 : 강원도 일원 / 관리기관, 선박·시설 등 공급대상 사용자

○ 주요 점검 사항 : (해·내수면) 관리기관 공급중지 기간 중 면세유 공급 등 부적정 공급 여부, 사용자의 공급대상 존재 여부 및 공급요건 해당 신고사항, (해수면) 낚시어선업 공급 조건 충족 여부 등

□ 관리기관, 어업인, 석유판매업자별 주요 점검사항 : **[붙임5]** 참고

[참고] 불법어업 면세유 지급금지 대상 확대

○ '15. 7. 1.부터 과징금을 납부해도 해당 불법어업 어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u>면세유 지급 정지(금지)</u>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8항 제2호

6 어선법

□ 표준어선형 지도·단속 강화 : **[붙임6]** 참고

○ 어선원의 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표준어선형 제도 시행('20. 12. 29.)

- 표준어선형 적용어선 점검 및 불법 증·개축 단속 실시(6월~)

□ 주요 점검사항

○ 검사 후 선체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자[제2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복원성 자료 제공하지 않거나 어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제15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않고 항행하거나 조업한 자[제15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어선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자[제16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어선검사증서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한 자[제29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자[제31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 내수면어업법

□ 지도점검 계획 : 7월 중

○ 지역/참여 : 강원도 일원 /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 지자체

□ 주요 점검사항

○ 유해어법(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이용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 무허가 어업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어구* 이용 포획·채취 등 유어질서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가솔린, 디젤, 전기모터 등의 동력장치가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 포획금지 기간·구역·체장 위반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포획금지 체장>

품명	다슬기	쏘가리	참게·동남참게	뱀장어	산천어	송어	황복	말조개
체장(cm)	각고 1.5이하	18이하	5이하	15이상~45이하	20이하	12이하	20이하	9이하

* 기수재첩 : 섬진강 각장 1.2cm 이하, 섬진강 외의 내수면 각장 1.5cm이하

<table><tr><td>붙임1</td><td>포획 · 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홍보물(`21.1.1.시행)</td></tr></table>

종명	금지체장	금지기간	비고
갈치	항문장 18cm	7.1~7.31*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illegible]
감성돔	25cm	5.1~5.31	
개서대	26cm	7.1~8.31	
갯장어	40cm		
고등어	21cm	(2021년) 4.26~5.26*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illegible]
기름가자미	17cm (~2023.12.31)		•2024.1.1일부터 20cm이하 포획·채취금지
넙치(광어)	35cm		
농어	30cm		
대구	35cm	1.16~2.15	
도루묵	11cm		
돌돔	24cm		
말쥐치	18cm	5.1~7.31	정치망·연안 구획어업은 6.1~7.31
명태	-	연중포획금지	
문치가자미	17cm (~2023.12.31)	12.1~1.31	•2024.1.1일부터 20cm이하 포획·채취금지
미거지	40cm		
민어	33cm		
방어	30cm		
볼락	15cm		
붕장어	35cm		
삼치	-	5.1~5.31	
연어	-	10.1~11.30	
옥돔	-	7.21~8.20	
용가자미	17cm (~2023.12.31)		•2024.1.1일부터 20cm이하 포획·채취금지
조피볼락(우럭)	23cm		
전어	-	5.1~7.15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
쥐노래미	20cm	11.1~12.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주)3의 해역에서는 11.15~12.14
참가자미	17cm (~2023.12.31)		•2024.1.1일부터 20cm이하 포획·채취금지
참돔	24cm		
참조기	15cm	7.1~7.31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4.22~8.10
참홍어	체반폭 42cm	6.1~7.15	
청어	20cm		
황돔	15cm		
황복	20cm		
꽃게	6.4cm	6.21~8.20*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의 암컷: 연중포획금지)	[illegible]
닭새우	5cm	7.1~8.31	
대게	9cm	6.1~11.30 (대게의 암컷: 연중포획금지)	[illegible]
대하	-	5.1~6.30	
민꽃게	-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민꽃게의 암컷: 연중포획금지	
붉은대게	-	7.10~8.25 (붉은대게의 암컷: 연중포획금지)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1~7.10
털게	7cm (강원도 한정)	4.1~5.31 (강원도 한정)	
펄닭새우	10cm	6.1~8.31	
가리비	-	3.1~6.3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주)7의 해역에 한정
기수재첩	각장 1.5cm		
마대오분자기	각장 4cm (제주도산 한정)		
오분자기	각장 4cm (제주도산 한정)	7.1~8.31 (제주특별자치도 한정)	
백합	각장 5cm	7.1~8.20	
새조개	-	6.16~9.30	대전, 부산, 울산, 경남, 전남(무안, 영광 제외), 제주는 6.1~9.30
소라	[illegible]	[illegible]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고
전복류	[illegible]	9.1~10.31	제주특별자치도는 10.1~12.31
키조개	[illegible]	7.1~8.31	
코끼리조개	-	4.1~7.31	
낙지	-	6.1~6.30 (시·도지사가 4.1~9.30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고시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함)	[illegible]
대문어	체중 600g		
살오징어	외투장 15cm	4.1~5.31	[illegible]
주꾸미	-	5.11~8.31	
참문어	-	5.16~6.30	[illegible]
해삼	-	7.1~7.31	
감태, 검둥감태	-	5.1~7.31	제주특별자치도는 1.1~12.31
개다시마	-	11.1~1.31	
곰피	-	5.1~7.31	
넓미역	-	9.1~11.30	[illegible]
대황	-	5.1~7.31	
도박류 (진도박, 먹도박)	-	10.1~4.30	
뜸부기	-	8.1~9.30	
우뭇가사리	-	11.1~4.30	
톳	-	10.1~1.3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 다만, 갈치, 고등어, 참조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제26943호, 2016.2.3.)에 따라 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붙임2 수산자원보호 홍보물

3단_A5(접)_대문접지 442X210 (446X214) ❸ ❷뒷면 ❶표지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암컷대게(일명 빵게)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배 모양이 빵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명 빵게라고 불리는 암컷대게는
연중포획이 금지되어 있지만, 별미라고 해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암컷대게 1마리가 품고 있는 알은 2만마리!
우리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팔지도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어린 오징어는 잡거나 먹으면 안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몸통길이가 15cm보다 작은 오징어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지만,
어린 오징어를 일명 총알오징어라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미 오징어로 잘 자랄 때까지 어린 오징어는 잡지도 먹지도 맙시다.

사라진 국내산 명태를 되살려줍시다.

한때는 국민생선으로 불릴 만큼 우리 식탁에 많이 올라왔었던 우리 명태!
남획 등으로 인해 멸종상태가 되었습니다.
명태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연중포획이 금지된 우리 명태!
국내산 명태를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불법행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대상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위반한 불법어획물의 유통·판매 등 행위

포 상 금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 신고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

신 고 처

- 불법어업신고센터 국번없이 1588-5119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051-410-1030~3
  eastship.mof.go.kr
- SNS 간편제보 : 카카오톡 채널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추가

신고방법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목격 시
- 전화신고 : 위치·상호·판매장소 등 불법행위의 정황
- SNS신고 : 불법행위의 정황과 그 정황이 담긴 사진, 동영상 전송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eastship.mof.go.kr

우리 수산자원 모든 국민이 보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❹ ❺ ❻

우리가 즐겨먹는 물고기들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는 잡아도 먹어도 안돼요

갈치
• 포획금지체장 •
18cm 이하 (항문장)
• 포획금지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고등어
• 포획금지체장 •
21cm 이하
• 포획금지기간 •
2021년도
4월 26일 ~ 5월 26일

대구
• 포획금지체장 •
35cm 이하
• 포획금지기간 •
1월 16일 ~ 2월 15일

명태
• 포획금지기간 •
1년 내내 포획 금지

대게
• 포획금지체장 •
9cm 이하 (두흉갑장)
• 포획금지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살오징어
• 포획금지체장 •
15cm 이하 (외투장)
• 포획금지기간 •
4월 1일 ~ 5월 31일

돔돔
• 포획금지체중 •
24cm 이하

대문어
• 포획금지체중 •
600g 이하

수산자원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봅시다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별표2] ('21.1.1. 시행)

수산자원	현 행	개정 또는 신설	수산자원	현 행	개정 또는 신설
청어	-	20cm 이하	살오징어	외투장 12cm	외투장 15cm
갈치	20cm 이하	25cm 이하	꼼치가자미	15cm 이하	20cm 이하
넙치(광어)	21cm 이하	35cm 이하	찰가자미	12cm 이하	20cm 이하
대구	30cm 이하	35cm 이하	용가자미	-	20cm 이하
대문어	400g 이하	600g 이하	기름가자미	-	20cm 이하

- 꼼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포획 금지 체장은 전장 17cm 이하로 한다.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기간·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별표1] ('21.1.1. 시행)

수산자원	현 행	개정 또는 신설
삼치	-	5월1일 ~ 5월31일
갈치	-	5월1일 ~ 5월31일
참문어	-	5월16일 ~ 6월30일 다만, 시도지사가 5월1일 ~ 9월15일 기간 중 46일 이상 별도고시 가능
살오징어	4월1일 ~ 5월31일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은 4월1일 ~ 4월30일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에는 제외	4월1일 ~ 5월31일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어업은 4월1일 ~ 4월30일
대구	3월1일 ~ 3월31일 다만,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1월1일 ~ 1월31일	1월16일 ~ 2월15일
넓미역	9월1일 ~ 11월30일 제주도 한정	9월1일 ~ 11월30일 제주도 한정 다만, 제주도지사가 5월1일 ~ 11월30일까지 기간 중 3개월 이상 별도고시 가능

비어업인도 금어기 · 금지체장 지켜줘야 합니다

금어기
특정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해당 어종에 대한 어업활동과 유어·낚시 등이 금지됩니다.

금지체장(중)
특정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체장(몸길이)·체중(무게)으로 정해진 측정방식에 따라 해당 크기 이하는 포획이 금지됩니다.

- 비어업인도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을 알고 지켜줘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3.24.)으로 비어업인도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20.9.25일부터 시행)됩니다.

-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 또는 방법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 잠수용 스쿠버 장비는 사용하지 못함

붙임3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근절 홍보물

주요 점검 내용 및 제재사항

어업인

점검내용	제재사항
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 · 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 이주(移住)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③ 어업용 외 용도 사용(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④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 그 어민 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

점검내용	제재사항
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그 외,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

하나, 매매, 어업정지, 감척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둘,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주요 점검 내용 및 제재사항

관리기관

점검내용	제재사항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석유판매업자

점검내용	제재사항
① 신청해야 할 환급 · 공제세액을 초과 신청	감면세액 추징
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 공제세액 신청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 관할하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4607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
Tel 051. 410. 1032, 1035 Fax 051. 410. 1046
eastship.mof.go.kr

eastship.mof.go.kr

바다 내일 해양수산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근절

동해어업관리단이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어업용 면세유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 각종 시설, 어업기계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참고)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포함)

관련규정

- 농 · 임 · 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국세청 고시)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 유류공급사업 요령(수협중앙회 내규)

공급 대상

선 박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 어민이 직접 포획 · 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시 설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 기초시설 · 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 생산시설
- 각종 자숙 · 건조시설
  - ✓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 ✓ 멸치 자숙(煮熟) · 건조시설
  - ✓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 · 건조시설
  - ✓ 오징어 건조시설
  - ✓ 새우 자숙 · 건조시설
  - ✓ 패류 자숙시설
  - ✓ 해삼 자숙 · 건조시설
- 축제식양식어업용 시설
-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수온유지용 및 양수용 한정)

어업기계

- ✓ 어업용 화물자동차 (면허 및 소형화물기 등록한 한정)
- ✓ 어업용 경운기
- ✓ 어업용 트랙터
- ✓ 어업용 크레인
- ✓ 패류선별기
- ✓ 어망 세척기

사용(생산) 실적신고서 등 제출

선 박

- 대상
  연근해 ·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선외기)을 부착한 선박
-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부착
  -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
  - 선박안의 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
-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상기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사용실적신고서 (선박출입항 신고서 포함)

어업기계 · 시설

- 대상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40㎘(휘발유의 경우에는 20㎘)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
  - 수산물생산 기초시설 · 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 생산시설
  -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 사료 등의 구입서류 사본
  - 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 · 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 생산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
  - 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공통사항

- 제출기한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7월, 1월 말일까지)
- 최종제출기한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까지(8월, 2월 말일까지)
- 제재사항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지

붙임4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 시행 알림**

□ 수산업법(개정 · 시행 2020.8.28.)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49조 제58조						
가. 나포(拿捕)된 경우		취소	–	–	취소	–	–
나. 그 밖의 경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29. 근해어업 ·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64조	정지 30일	취소	–	정지 30일	취소	–
34. 혼획의 관리를 위반한 경우	제41조의3						
가. 포획 · 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진 허가를 받고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한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 · 채취한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다.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경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라. 혼획으로 포획 · 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않은 경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35.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3조 제1항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소	–	–	–	–	–
나.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경우(대형트롤어업으로 한정한다)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다. 그 밖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48.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2호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51.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규모 · 형태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2.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어구 사용량이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 30일, 3배 초과시 60일을 처분기준에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제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55.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	제64조의2 제1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자세한 사항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자원관리법(개정 · 시행 2020.8.28.)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거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4조 제5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6.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5조 제2항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10. 연근해 어선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으로 한정한다)	제22조 제1호 · 제2호	정지 60일	취소	-	정지 60일	취소	-
나.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가.의 경우는 제외하며, 선장이 어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사실을 어선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제1호 · 제2호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다.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제22조 제3호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1.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 · 채취한 경우(배분량 할당 대상 업종으로 한정한다)	제37조 제2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22.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는 자에 대한 포획 · 채취의 정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자세한 사항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5 면세유 주요 점검사항

□ 주요점검 사항

점검 대상	점검내용	제재사항
관리기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어업인	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사망·이어(離漁)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	
	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그 외,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 - 어업 등에 대한 제한(취소, 감척 등)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수산업법」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석유판매업자	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 신청	감면세액 추징
	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세액 신청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	

붙임6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안내문

1 적용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 및 **근해어업** 허가 어선

※ **적용제외** : 연근해 허가어업이 아닌 **원양어선**, 어장관리선 등 **톤수제한이 없는 어선**

2 표준어선형의 복지공간 허용범위 및 유의사항

가. 복지공간 허용범위

① **선원실**

② 선원이 사용하는 식당, 조리실 등 **거주제실**

③ 욕실, 화장실, 세탁실 등 **위생제실**

④ **안전조업 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

나. 유의사항

①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최상층 갑판상부에 위치할 것

③ 다른 목적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④ 복지공간 허용범위 ④에 따른 안전조업 준비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 45% 초과하여 증설 가능

3 어선별 표준어선형이 되기 위한 조건

가.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총톤수 10톤 미만 근해어선

① 어선의 전장은 어업허가톤수 **표준전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총톤수 9.77톤 어선의 경우, 전장이 21m를 초과 할 수 없음
(여기에서 '전장'이란, 계획수선과 평행한 선수의 최전단부터 선미의 최후단 사이 직선상 거리임)

② **안전성기준(복원성)** 및 **안전기준선(만재흘수선)**을 만족할 것

※ **적용제외** :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분뇨오염방지설비** 또는 **분뇨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갖출 것

※ **적용제외** : 최대승선인원 **16인 미만 어선**

☞ 최대승선인원 16인 미만 어선은 사람이 들어가기 적당한 크기의 화장실 공간 설치할 것

나. 총톤수 10톤 이상 근해어선

① 배 길이 24m 미만의 경우, 별표3에 따른 **안전성기준(복원성)** 및 **안전기준선(만재흘수선)**을 만족할 것

② 배 길이 24m 이상의 경우,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제4조(만재흘수선 표시 등)**를 만족할 것